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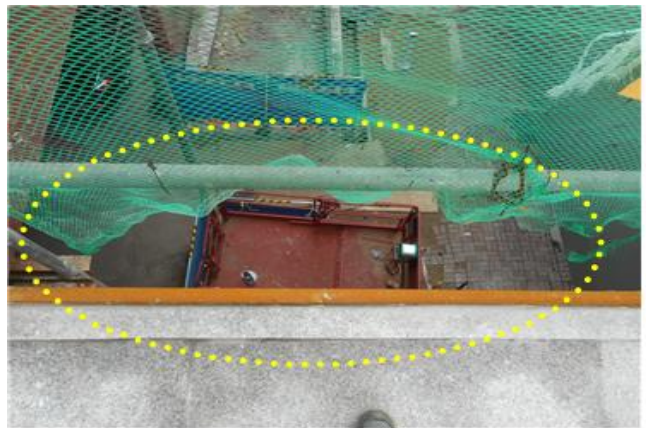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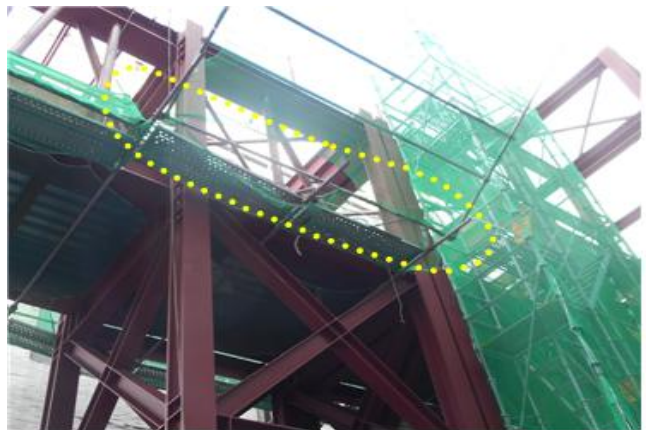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(2단계)[장기1차]]

- 점검일시 : 2020.07.15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연결통로A 작업자 중 낙하/비래, 충돌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모 턱끈을 미착용하고 있어 안전모가 충격에 방호가 안 되는 상황이므로 재발방지 교육 요망
 - 신설데크 워킹타워 인근의 낙하물 방지망이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보수 요망
 - 기존데크 슬래브 정착된 고소작업대 상부 구간 안전난간과 구조물 이격된 부분에 낙하물 방지망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작업자 투입 전에 보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33조(보호구의 관리),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는 협소한 공간에서 흠막이가시설과 거푸집동바리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현장 상황으로 이동통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작업발판, 바닥합판이 미고정 상태가 많아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수조사 하여 보수 후 작업 요망

- 연결통로A 출입구 인근 단부 높이가 1.5m 이상인 개소에서 안전한 이동식통로가 미확보된 상태로 버팀보와 거푸집을 밟고 상승/하강 중으로 전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조치 및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항공마대에는 인양시 손상이 우려되는 내용물 철근, 철판 등 날카로운 자재 적재를 금지하고, 마대 용량의 90% 이상 적재하지 않으며, 반복 사용으로 부식이나 손상된 마대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요망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14(항공마대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는 협소한 공간에서 흠막이가시설 해체와 거푸집동바리 조립/해체가 동시에 진행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한 순서로 해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도 및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, 현장에서는 계획성 없이 해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작업방법 개선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 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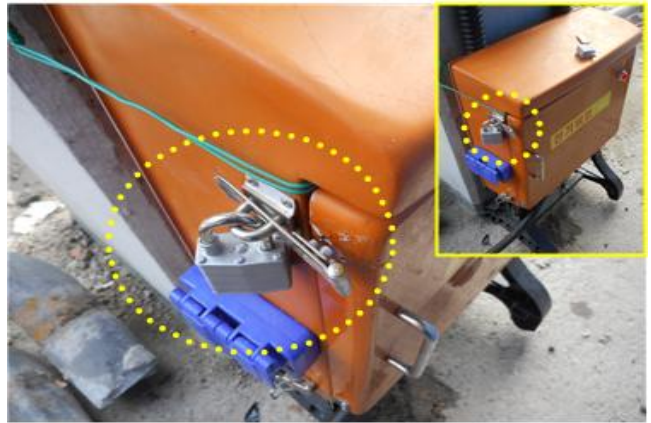
○ 가설비계 안전(건축부)

- 기존데크에 대인용 리프트를 설치 중으로 승강 통로에 단차가 있어 설치한 가설비계 계단참은 수직재로 상부 작업발판을 받치는 구조로 수직 재가 H형강 상단에 지지되어 있으나 H형강이 발로 밀어도 밀릴 만큼 고정이 안 되어 있어 작업발판 지지구조로 부족하므로 보강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(비계의 점검 및 보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기존데크 대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개소에 운영 중인 분전반 시건장치가 파손되어 접촉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수리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16(분전반)



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

- 기존데크에 설치 중인 대인용 리프트 출입구에는 최대적재용량, 사용 순서 및 주의사항을 부착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여 관리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(조립 등의 작업),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기존데크 하부/상부 작업장 공통으로 자재를 경사져 높게 쌓을 경우 주변을 지나가던 작업자에게 전도되어 협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